FIND칼리지 운영 규정

제정 2018. 05. 03.
2차 전부개정 2022. 06.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학칙 제2조 및 제61조의2, 직제규정 제7조의2에서 정한 FIND칼리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FIND칼리지에는 교양교육센터, FIND-MYWAY센터, 교양영어센터, 모집단위인 자유전공학부, FIND칼리지의 행정 및 학사를 지원하는 교학지원팀을 둔다.

② FIND칼리지에는 학장, 각 센터장, 교양영역별 주임교수, 교양필수과목 책임교수, 자유전공학부장, 각 센터와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원, 행정직원을 둔다.

③ 학장, 센터장, 주임교수, 책임교수, 학부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FIND칼리지 소속 교원은 각 센터의 위원, 자유전공학부의 교원 또는 멘토 위원으로서 소정의 책무를 수행한다.

⑤ FIND칼리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단과대학 학과소속 교원을 FIND칼리지 소속 겸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업무) ① FIND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IND칼리지 발전계획 수립, 과제 추진, 점검, 개선
2. 교양교육과정(기초교양, 융합교양, 소양교양, 균형교양, 협약교과) 기획, 편성 및 운영, 평가, 개선
3. 핵심역량지수 기반 학습 성과 평가 및 환류(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편)
4. 학제적 융합교육 기획, 편성 및 운영, 평가, 개선
5. 사회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목 개발
6.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 교과목, 수업 지원
7. 자유전공학부의 지원체계 구축, 운영, 평가, 개선
8. 교내 교양교육 이외에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운영

② 교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기획, 편성 및 운영, 평가, 개선
2. 교양교육과정 종합개선보고서 작성
3. 교양교과위원회 운영

③ FIND-MYWAY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양교양 및 인성진로 교육과 연계되는 교과와 비교과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운영, 평가, 개선
2. 소양교양 종합개선보고서 작성

④ 교양영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어 관련 교과목 및 특별프로그램, 교내·외 위탁(연수) 교육 등을 기획, 편성 및 운영, 평가, 개선
2. 영어 관련 종합개선보고서 작성

제4조(학장 등의 임명) ① FIND칼리지 학장은 FIND칼리지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교수 이상의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유전공학부장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조교수 이상의 일반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주임교수는 교양영역별로 1명씩을 두며, FIND칼리지 소속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⑤ 책임교수는 교양필수과목별로 1명씩 두며, FIND칼리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⑥ 자유전공학부 전공탐색 멘토위원은 타 학과(부) 소속 교원 중에서 학과(부)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한다.

제5조(주임교수 및 책임교수의 임무) ① 주임교수는 교양영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관련 학과와 협의하여 교강사 배정, 수업관리, 교과과정의 검토 및 그에 대한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책임교수는 교양필수과목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재개발 등 교과목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공탐색 멘토위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전공탐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FIND칼리지운영위원회) ① FIND칼리지의 발전계획, 교육목표, 학사운영,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FIND칼리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FIND칼리지운영위원회는 FIND칼리지학장, 각 센터장, 자유전공학부장, 영역별 주임교수, 책임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교양교과위원회) ① 교양교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과목의 방향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교육 수요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 포함)
3. 교양교과목 과정의 영역 구분, 개설학기 구분 등 교양교육 편성에 관한 사항

② 교양교과위원회는 FIND칼리지학장, 각 센터장, 영역별 주임교수, 책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과 외부인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FIND칼리지학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 후 시행한다. 단, 과목명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FIND칼리지학장이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9호, 2022.6.13.)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